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합54783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2. B

3. C

4. 주식회사 이에스캠텍

5. D

변론 종결 2017. 1. 18.

판결 선고 2017. 2. 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2,017,667원 및 그 중 220,327,966원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9. 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5. 8. 2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20. 접수 제936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5. 9. 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 이에스캠텍은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8. 접수 제1022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2015. 9. 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라. 피고 D은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8. 접수 제1026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제3항의 가, 다, 라항, 제3항의 나항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이에스컴텍(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8. 접수

제139533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14.2.17.	170,000,000	2015.2.16.(2016.2.16.)	2014.2.17.	중소기업자금대출	200,000,000
2	2015.5.26.	45,000,000	2016.5.25.	2015.5.26.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

나. 피고 A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3. 4.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각 대출받았으나, 2015. 9. 3. 사업장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16. 10. 17.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6. 3. 4. 중소기업은행에게 220,327,966원(=1차보증 대출원금 170,000,000원+이자 4,302,135원+2차보증 대출원금 45,000,000원+이자 1,025,86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850,814원이고, 이후 317,603원을 회수하여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잔액은 1,533,211원이다.

바. 또한, 피고 A이 위 보증기한 내 보증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약금 156,490원이 발생하였다.

사.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A은 2015. 8. 20.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접수 제936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피고 A은 2015. 9. 7. 형인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8. 피고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접수 제10229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그 후 피고 C은 2015. 11. 18.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 제139533호로 위 근저당권 중 3/10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지분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지분일부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피고 A은 2015. 9. 8.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1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접수 제10267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3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3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4)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 피고 A, B, 피고 회사,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222,017,667원(=대위변제금 220,327,966원+채권보전비용 1,533,211원+위약금 156,4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20,327,96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6. 9.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A이 2016. 10. 17. 대출금 채무를 연체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16. 3. 4.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 C,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경위 및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피고 A으로서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상태가 심화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위 피고들 및 전득자인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지분일부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서 주등기인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일부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2 근저당권을 일부 양수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등기인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해당 부분의 말소를 구하면 족한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지분일부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에는 위와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종원

판사조운정

판사윤재필

별지